# 특 허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6허7145 등록무효(특)

원 고 주식회사 린나이코리아(등기부상 상호 : 린나이코리아 주식회사)

피 고 주식회사 그랜드우성

변론종결 2017. 5. 16.

판 결 선 고 2017. 7. 6.

#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16. 8. 29. 2015당390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1) 피고는 2015. 7. 14.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하여, "특허 제880609호(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청구항 1, 3, 4(이하 순번에 따라 '이사건 제1항 발명' 등으로 부른다)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종래기술1)과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5당3904)을 청구하였다.
- (2) 특허심판원은 2016. 8. 29. "이 사건 제1, 3, 4항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종래기술과 선행발명 22)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 (1) 발명의 명칭 : 튀김기
- (2) 출원일/ 출원번호 : 2007. 9. 12./ 제10-2007-92717호
- (3) 등록일/ 등록번호 : 2009. 1. 20./ 특허 제880609호
- (4) 발명의 개요
  -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튀김기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는 튀김기의

<sup>2)</sup> 선행발명 2는 이 사건 심결에서의 비교대상발명 2와 대응되는 것으로써, 원고에 의해 제출된 선행발명 2의 갑제3호증의 1 내지 5와 이 사건 심결에서의 비교대상발명 2로 사용된 서증들을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다.

선행발명 2로 제출된 서증	심결에서의 서증	대비결과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동일
갑 제3호증의 2	구술심리시 촬영된 참고도면 4	동일
갑 제3호증의 3	_	새로운 증거사진
갑 제3호증의 4	_	새로운 증거사진
갑 제3호증의 5	갑 제4호증의 8	동일

<sup>1)</sup> 당사자들 및 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배경기술'란에 기재된 종래기술을 '비교대상발명 1'로 지칭하고 있다.

구성 및 작용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다.

#### (가) 기술분야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튀김기에 관한 것이다(문단번호 [1]).

### (나) 배경기술

일반적으로 튀김기는 … 외형을 이루며 후단부에 배기부(3)가 마련된 하우징(2)과, 이 하우징(2)의 내부에 배치되고 상방이 개방되며 내부에 가열부(5)를 갖는 유조(4)와, 이 유조(4)의 바닥 저면으로 돌출된 배유구(6)와, 이 배유구(6) 내의 개폐밸브(미도시)와 연결되는 개폐로드(8a)와 이 개폐로드(8a) 선단부에 마련된 개폐핸들(8b)로 이루어진 밸브개폐부(8) 등을 포함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문단번호 [2]).

# 

### (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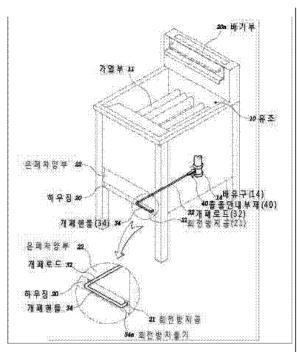
배유구의 개폐밸브를 개폐시키도록 하는 개폐핸들을 사용시에만 외부로 인출시켜 회전 조작할 수 있도록 하고 미 사용시에는 하우징의 은폐차양부 내로 몰입 은폐시 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튀김 조리 중 조리자의 실수나 또는 기타 외부의 가압에 의 해 의도와 달리 개폐핸들이 회전 조작되면서 개폐밸브가 개방되는 등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튀김기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문단번호 [6]).

### (라) 과제 해결 수단

본 발명에 따른 튀김기는 상방이 개방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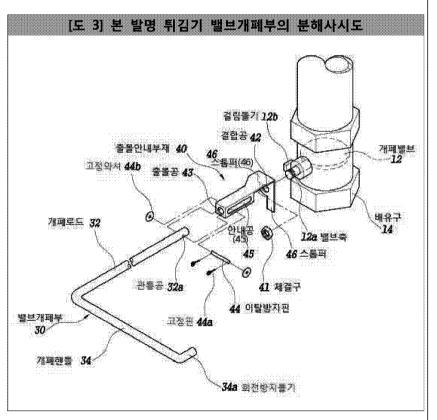
[도 2] 본 발명 튀김기

내부에 가열부(11)가 형성되며 바닥 저면에 튀김유를 외부로 배유시키기 위한 개페밸브 (12)가 마련된 배유구(14)를 갖는 유조(10)와, 이 유조(10)의 외부를 덮어씌우며 후단부에 배기부(20a)가 구비된 하우징(20) 및 상기 배 유구(14) 내부의 개페밸브(12)와 연결되어 하 우징(20) 전방으로 연장되는 개페로드(32)와 이 개페로드(32)의 선단부에 일체형으로 형성 되어 개페로드(32)를 회전 조작시키는 개페핸 들(34)로 이루어진 밸브개페부(30)를 포함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문단번호 [15]).



그리고 상기 개폐로드(32) 의 소정부위에 개폐핸들(34) 이 전후로 출몰되도록 하는 출몰안내부재(40)가 더 구비 되어 있다(문단번호 [16]).

상기 출몰안내부재(40)는, 상기 배유구(14)의 외주면으로 돌출된 개폐밸브(12)의 밸브축(12a)과 개폐로드(32)의 단부를 연결시키는 것으로서, 그 일단부에 개폐밸브(12)의 밸브축(12a)을 관통시켜 체결구(41)로 결합시키



는 결합공(42)이 형성되고, 그 타단부에 개폐로드(32)가 관통되어 전후로 출몰되도록 하는 출몰공(43)이 형성되며, 양측면에 출몰공(43)으로 관통된 개폐로드(32)를 관통

하여 가로지르는 이탈방지핀(44)이 전후로 슬라이딩되도록 하는 안내공(45)이 형성되어 있다(문단번호 [17]).

여기서, 상기 이탈방지핀(44)은 개폐로드(32)와 핀 결합되어 이 개폐로드(32)와 일체로 이동되면서 이탈이 방지되도록 함은 물론 이 개폐로드(32)의 회전시 출몰안내부재(40)의 안내공(45) 테두리를 가압하여 밸브축(12a)이 회전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문단번호 [18]).

그리고 상기 밸브축(12a) 인접부에 걸림돌기(12b)가 형성되고, 이에 대응되는 출몰 안내부재(40)의 결합공(42) 인접부에 이 출몰안내부재(40)의 일정각도 회전 후 상기 걸림돌기(12b)에 걸리는 스톱퍼(46)가 더 형성되어 있다(문단번호 [20]).

이러한 상기 스톱퍼(46)는 서로 직각을 이루는 위치에 각각 형성된 한 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문단번호 [21]).

즉, 상기 스톱퍼(46)는 개폐핸들(34)과 동일 평면상에 놓여있는 개폐밸브(12)가 개 방되고 폐쇄되는 수평 및 수직 상태에서 정확하게 개폐핸들(34)의 회전조작이 정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문단번호 [22]).

## (5) 청구범위

【청구항 1】 상방이 개방되고 내부에 공간부가 형성되며 바닥 저면에 튀김유를 외부로 배유시키기 위한 개폐밸브(12)가 마련된 배유구(14)를 갖는 유조(10)와, 이유조(10)의 외부를 덮어씌우는 하우징(20) 및 상기 배유구(14) 내부의 개폐밸브(12)와 연결되어 하우징(20) 전방으로 연장되는 개폐로드(32)와 이 개폐로드(32)의 선단부에 일체형으로 형성되어 개폐로드(32)를 회전 조작시키는 개폐핸들(34)로 이루어진 밸브개 폐부(30)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튀김기(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이고, 상기 개폐로드(32)<sup>3)</sup>의 소정부위에 개폐핸들(34)이 전후로 출몰되도록 하는 출몰안내부재(40)(이하 '구

<sup>3)</sup>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3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32)"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고쳐서 기재한다.

성요소 2-1'이라 한다)가 더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튀김기에 있어서, 상기 출몰안 내부재(40)는, 상기 배유구(14)의 외주면으로 돌출된 개폐밸브(12)의 밸브축(12a)과 개폐로드(32)의 단부를 연결시키되, 일단부에 개폐밸브(12)의 밸브축(12a)을 관통시켜 체결구(41)로 결합시키는 결합공(42)이 형성되고, 그 타단부에 개폐로드(32)가 관통되어 전후로 출몰되도록 하는 출몰공(43)이 형성되며(이하 '구성요소 2-2'라 한다), 양측면에 출몰공(43)으로 관통된 개폐로드(32)를 관통하여 가로지르는 이탈방지핀(44)이 전후로 슬라이딩되도록 하는 안내공(45)이 형성된 것(이하 '구성요소 2-3'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튀김기.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밸브축(12a) 인접부에 걸림돌기(12b)가 형성되고, 이에 대응되는 출몰안내부재(40)의 결합공(42) 인접부에 이 출몰안내부재(40)의 일정각도 회전 후 상기 걸림돌기(12b)에 걸리는 스톱퍼(46)가 더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튀김기.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스톱퍼(46)는 서로 직각을 이루는 위치에 각각 형성된 한 쌍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튀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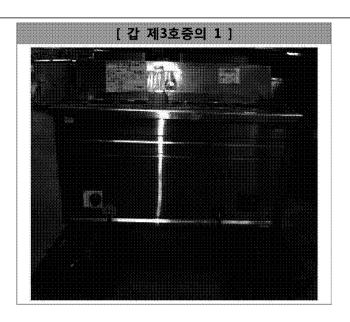
## 다. 선행발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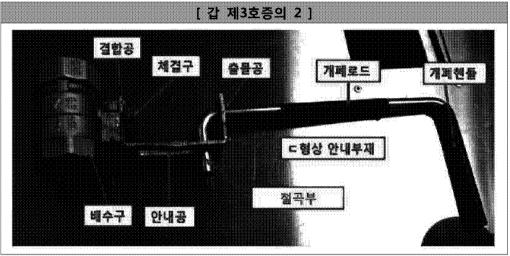
# (1) 선행발명 2(갑 제3호증의 1 내지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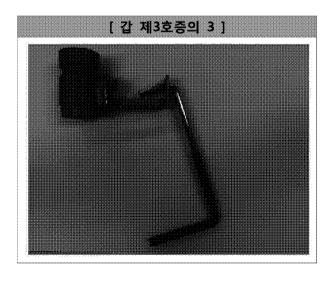
선행발명 2는 일본 회사(마루젠)가 2003년 생산·판매한 '라면 솥' 제품에 관한 것으로,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에 포함된 도면들은 다음과 같다.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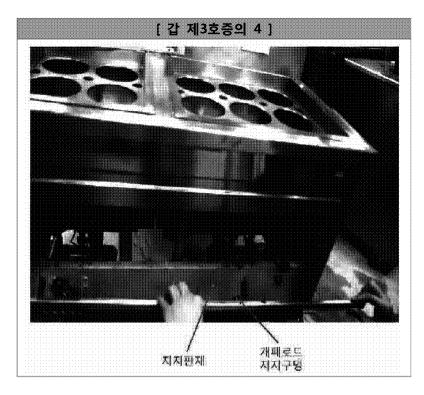
<sup>4)</sup> 원고는 심판단계에서 선행발명 2의 제품(라면 솥)이 2003. 10.에 생산된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기술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6호증 심결문 4면 7~9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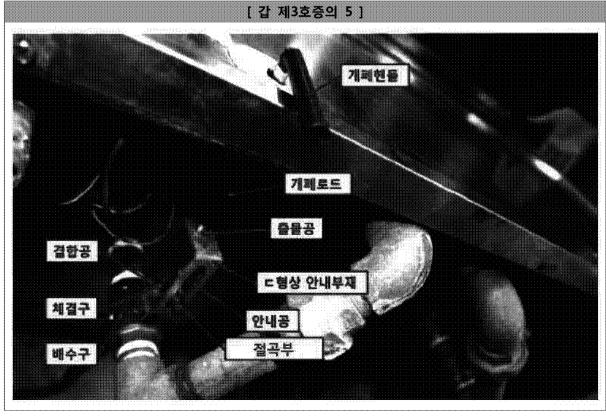
<sup>5)</sup> 선행발명 2의 도면들에 기재된 명칭들은 피고가 심판단계에서 편의상 명명한 명칭들인데, 갑 제3호증의 2, 5에서 '절곡부'는 원고가 새롭게 명명한 것으로, 피고 및 이 사건 심결에서는 '이탈방지돌기'로 부르고 있다.











#### (2) 선행발명 3(갑 제4호증)

선행발명 3은 2007. 3. 9. 등록특허공보 제10-690963호로 공고된 '작동기구간의 신축연결장치, 자동/수동 겸용 잠금장치 및 이를 이용한 문'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작동부재 신축연결장치와 이를 이용한 자동/수동 겸용 잠금장치 및 이를 이용한 문에 관한 것이다(5면 1번째 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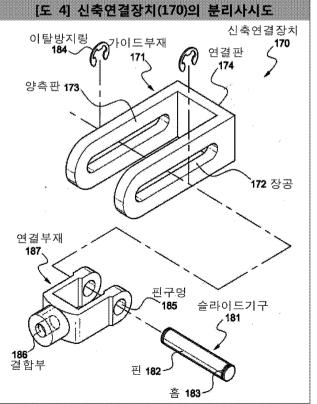
#### (나)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방폭문 등의 문에서 자동/수동 겸용으로 문을 잠그거나 열 수 있도록 해주고 수동작동기구가 자동작동기구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동/수 동 겸용 잠금기능을 갖는 문을 제공하는데 있다(5면 9번째 단락).

# (다) 과제 해결 수단

11번째 단락).

도 4를 참조하면,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신축연결장치(170)는 가이드 부재(171)를 구비하고 있다. 이 가이드부 재(171)는 장공(172)이 마주보고 각각 형 성되어 있는 양 측판(173)과 양 측판(173) 의 후단을 연결하는 연결판(174)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러한 신축연결장치(170)는 실린더(152)의 길이방향으로 신축연결장 치(170)가 일정 길이만큼 서로 힘을 주고 받지 않고 이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 장공(172)이 형성된 하나의 부재로 형성하여도 된다. 본 발명에 따른 신축연결장치(170)는 장공(172)에 결합되어 장공(172)의 안내를 받으며 일정거리 이동될 수 있는 슬라이드기구(181)를 구비하고 있다. 슬라이드기구(181)는 장공(172)에 양단이 삽입되어 장공(172)을 따라 이동될 수 있는 핀(182)과 일단에 핀(182)을 수용할 수 있는 핀구멍(185)이 형성되고 타단에는 실린더기구(150)의 제2로드(156)와 연결할 수 있는 결합부(186)가 형성되어 있는 연결부재(187)로 이루어져있다. 핀(182)의 양단 부근에는 홈(183)이 형성되고, 이 홈(183)에는 이탈방지링(184)이 결합되어 장공(172)에 결합된 핀(182)이 장공(172)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8면4번째 단락).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 3, 4항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종래기술과 선행발명 2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1) 선행발명 2의 배수밸브조작부는 ㄷ형상 안내부재의 출몰공에 개폐로드의 한쪽 단부를 단순히 '¬'자 형상으로 절곡시킨 절곡부를 끼워 넣으면서 개폐로드가 ㄷ형상 안내부재와 수평을 이루도록 90도 회전함으로써 절곡부가 안내공에 삽입되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구성요소 2-1 내지 2-3과 선행발명 2의 배수밸브조작부는 ① 안내부재의 구조, ② 개폐로드 단부의 형상, ③ 개폐로드와 안내부재의 결합구조 및 수단에 있어서 현격한 구성적 차이가 있다.
  -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이탈방지핀(44)이 출몰안내부재(40) 양측면에 형성된

안내공(45)과 개폐로드(32)의 단부에 형성되어 있는 관통공(32a)을 통과하여 결합되도록 구성된다는 점이 선행발명 2의 배수밸브조작부와 가장 큰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개폐로드(32)의 하중을 출몰안내부재(40)가 자체적으로 지지하면서 개폐로드(32)가 출몰안내부재(40)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는데, 선행발명 2는 이러한 기능을 구비하지 못한다. 따라서 선행발명 2는 개폐로드를 개폐핸들 측에서지지해줄 수단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지지판재를 구비하고 있고 이러한 구조는 생산단가 상승 및 제품 수리의 용이성을 현저히 낮춘다.

- (3) 선행발명 2에서는 개폐로드를 회전시킬 때 그 토크가 ㄷ형상 안내부재의 한쪽 면에만 작용하는 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토크가 이탈방지핀(44)에 의하여 출몰 안내부재(40) 양측면의 안내공(45)에 분산되어 작용하므로, 선행발명 2에 비하여 안정적으로 개폐밸브를 조작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출몰안내부재(40)는 위의 사유로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아 내구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 (4)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출몰안내부재(40)의 출몰공(43)에 일직선 형상의 개폐로드(32)를 삽입한 후, 개폐로드(32)의 단부에 형성된 관통공(32a)에 이탈방지핀(44)을 끼워 넣어 결합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어 생산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반면, 선행발명 2는 개폐로드를 결합하거나 탈거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 3, 4항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종래기술과 선행발명들(특히 선행발명 2)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1)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2는 안내부재의 구조와 관련하여 안내공의 개수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고, 개폐로드 단부의 형상 차이는 안내공의 개수의 차 이로 인한 결합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써, 양 발명의 대응구성은 기능 및 효과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처럼 안내공(45)이 출몰안내부재(40)의 양 쪽에 2개 구비되어 있는 구성은 선행발명 3에서 장공(172)이 가이드부재(171)의양 측면에 2개 형성된 것과 동일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이탈방지핀(44)은 선행발명 3의 슬라이드기구(181)의 핀(182)과 동일하다.

-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개페로드(32)의 하중을 출몰안내부재(40)가 자체적으로 지지"한다는 기능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문단번호 [18]에 기재 또는 시사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 (3)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2 모두 개폐밸브(12)를 조작하는 조작력은 개폐로드(32)에 가해지는 모멘트이고, 이 모멘트(M)는 개폐로드를 누르는 힘(F)과 개폐핸들(34)의 길이(L)의 곱이며(M=F×L), 양 발명에서 F와 L이 동일하다면 개폐밸브(12)를 여는 조작력인 모멘트(M)도 서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 2에 비하여 안정적으로 밸브를 조작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 (4)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 2에 비해 생산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을 효과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며, 선행발명 2도 ㄷ형상 안내부재와 결합공을 6각 렌지 등으로 분리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한 분해·조립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다. 이 사건의 쟁점

당사자들의 주장을 통하여 정리되는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출 몰안내부재(40)와 관련된 구성요소 2-3을 선행발명 2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 는지 여부이다.

#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2의 구성요소별 대비

구성 요소	이 사건 제1항 발명	선행발명 2
1	상방이 개방되고 내부에 공간부가 형성되며 바닥 저면에 튀김유를 외부로 배유시키기 위한 개폐밸브(12)가 마련된 배유구(14)를 갖는 유조(10)와, 이 유조(10)의 외부를 덮어씌우는 하우징(20) 및 상기 배유구(14) 내부의 개폐밸브(12)와 연결되어하우징(20) 전방으로 연장되는 개폐로드(32)와 이 개폐로드(32)의 선단부에 일체형으로 형성되어 개폐로드(32)를 회전 조작시키는 개폐핸들(34)로 이루어진 밸브개폐부(30)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튀김기이고.	상방의 일부가 개방되고 내부에 공간부가 형성되며 바닥 저면에 물을 외부로 배수 시키기 위한 개폐밸브가 마련된 배수구를 갖는 수조와, 이 수조의 외부를 덮어씌우 는 하우징 및 상기 배수구 내부의 개폐밸 브와 연결되어 하우징 전방으로 연장되는 개폐로드와 이 개폐로드의 선단부에 일체 형으로 형성되어 개폐로드를 회전조작시 키는 개폐핸들로 이루어진 밸브개폐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라면 솥(갑 제3호증의 1, 2 참조)
2-1	상기 개폐로드(32)의 소정부위에 개폐핸들 (34)이 전후로 출몰되도록 하는 출몰안내 부재(40)가 더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튀김기에 있어서,	개폐로드의 일단부에 위치하고, 개폐핸들 이 전후 출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상 안내부재'(갑 제3호증의 2 참조)
2-2	상기 출몰안내부재(40)는, 상기 배유구 (14)의 외주면으로 돌출된 개폐밸브(12)의 밸브축(12a)과 개폐로드(32)의 단부를 연결시키되, 일단부에 개폐밸브(12)의 밸브축(12a)을 관통시켜 체결구(41)로 결합시키는 결합공(42)이 형성되고, 그 타단부에 개폐로드(32)가 관통되어 전후로 출몰되도록 하는 출몰공(43)이 형성되며,	개폐로드가 다형상 안내부재의 출몰공을 관통하여 출몰할 수 있도록 결합됨에 따라 다형상 안내부재를 매개로 배수구에 연결되는데, 그 연결은 배수구 외주면의 일부가 다형상 안내부재 일단의 결합공을 통과하여 체결구에 결합되는 것(갑 제3호 증의 2 참조)
2-3	양측면에 출몰공(43)으로 관통된 개폐로드 (32)를 관통하여 가로지르는 이탈방지핀	<ul><li>다형상 안내부재의 일측에 안내공이 형성</li><li>되고, 출몰공을 통과한 개폐로드의 끝단에</li></ul>

(44)이 전후로 슬라이딩되도록 하는 안내 공(45)이 형성된 것

형성된 이탈방지돌기가 안내공을 전후로 슬라이딩함에 따라 개폐로드가 출몰공을 전후 이동할 수 있는 것(갑 제3호증의 2 참조)

#### (2) 공통점 및 차이점

#### (가) 구성요소 1 관련

구성요소 1의 튀김기는 개폐밸브(12)가 마련된 배유구(14)를 갖는 유조 (10), 하우징(20), 개폐로드(32)와 개폐핸들(34)로 이루어진 밸브개폐부(30)로 구성되고, 선행발명 2의 라면 솥은 개폐밸브가 마련된 배수구를 갖는 수조, 하우징, 개폐로드와 개폐핸들로 이루어진 밸브개폐부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구성요소 1의 튀김기와 선행발명 2의 라면 솥은 하우징, 개폐로드 및 개폐핸들로 이루어진 밸브개폐부를 구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구성형태를 갖는 조리기구로 보인다.

다만, 구성요소 1에서의 유조(10)는 튀김유를 외부로 배유시키기 위한 개폐밸브 (12)가 마련된 배유구를 갖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2의 수조는 물을 외부로 배수시키기 위한 개폐밸브가 마련된 배수구를 갖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가 있다.

### (나) 구성요소 2-1 내지 2-3 관련

구성요소 2-1과 선행발명 2의 대응구성은 개폐로드의 소정부위(일단부)에 출몰안내부재(ㄷ형상 안내부재)가 구비되고(위치하고), 개폐핸들이 전후로 출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구성형태 및 작용기능이 동일하다.

구성요소 2-2와 선행발명 2의 대응구성은 출몰안내부재(ㄷ형상 안내부재)에 의하여 개폐밸브의 밸브축과 개폐로드가 연결되고, 배유구(배수구)의 외주면으로 돌출된 개

페밸브의 밸브축이 출몰안내부재(ㄷ형상 안내부재)의 일단부에 형성된 결합공을 통과하여 체결구에 결합되며, 개페로드가 출몰안내부재(ㄷ형상 안내부재)의 타단부에 형성된 출몰공을 관통하여 출몰한다는 점에서 그 구성형태 및 작용기능이 동일하다.

다만, 구성요소 2-3은 출몰안내부재의 양측면에 개폐로드(32)를 가로지르는 이탈 방지핀(44)이 전후로 슬라이딩되도록 하는 안내공(45)이 형성된 것인 반면, 선행발명 2의 대응구성은 ㄷ형상 안내부재의 일측에 개폐로드의 끝단에 형성된 이탈방지돌기(절 곡부)가 전후로 슬라이딩되도록 안내공이 형성된 것이므로, 양 대응구성은 출몰안내부 재(ㄷ형상 안내부재)의 안내공 개수, 출몰안내부재(ㄷ형상 안내부재)와 개폐로드의 결합방식에 차이(이하 '차이점 2'라 한다)가 있다.

#### (3) 차이점의 용이 극복 여부

#### (가) 차이점 1에 대한 검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성요소 1에서의 유조(10)는 튀김유를 외부로 배유시키기 위한 개폐밸브(12)가 마련된 배유구를 갖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2의 수조는 물을 외부로 배수시키기 위한 개폐밸브가 마련된 배수구를 갖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 대응구성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로부터 구성 요소 1을 도출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① 구성요소 1의 튀김기와 선행발명 2의 라면 솥은 고온의 액체(기름 또는 물)를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하는 장치로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 ② 구성요소 1의 유조와 선행발명 2의 수조는 개폐밸브를 마련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다.

③ 따라서 구성요소 1의 유조와 선행발명 2의 수조는 고온의 액체(기름 또는 물) 를 배유(배수)시킬 수 있는 동일한 작용효과를 갖는다.

게다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는 그 종래기술로서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다.

"일반적으로 튀김기는 … 외형을 이루며 후단부에 배기부(3)가 마련된 하우징(2)과, 이 하우징(2)의 내부에 배치되고 상방이 개방되며 내부에 가열부(5)를 갖는 유조(4)와, 이 유조(4)의 바닥 저면으로 돌출된 배유구(6)와, 이 배유구(6) 내의 개폐밸브(미도시)와 연결되는 개폐로드(8a)와 이 개폐로드(8a) 선단부에 마련된 개폐핸들(8b)로 이루어진 밸브개폐부(8) 등을 포함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문단번호 [2]).

구성요소 1과 위 종래기술을 대비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 제 등에 비추어 구성요소 1은 종래기술에 비해 차별적인 기술적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도 구성요소 1이 공지기술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구성요소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 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종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차이점 1은 쉽게 극복될 수 있다.

# (나) 차이점 2에 대한 검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성요소 2-3과 선행발명 2의 대응구성은 출몰안내부 재(□형상 안내부재)의 안내공 개수, 출몰안내부재(□형상 안내부재)와 개폐로드의 결합방식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선행발명 2에 개시된 기술사항과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차이점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 의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① 구성요소 2-3의 출몰안내부재(40)의 양측면에 형성된 안내공(45)은 개페로드 (32)가 전후로 슬라이딩되도록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문단번호 [17], 도 3). 한편, 선행발명 2의 안내공도 개폐로드가 슬라이딩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양 발

명에서 안내공은 그 개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개폐로드가 슬라이딩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기본적인 기능에 차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② 구성요소 2-3에서 이탈방지핀(44)은 개폐로드와 핀 결합되어 개폐로드가 (출몰안내부재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문단번호 [18], 도 3). 한편, 선행발명 2에서도 개폐로드 단부의 절곡부(이탈방지돌기)가 안내공에 삽입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선행발명 2의 절곡부도 안내공에 삽입되어 개폐로드가 ㄷ형상 안내부재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게 되므로, 양 발명에서 출몰안내부재(ㄷ형상안내부재)와 개폐로드의 결합방식에 따른 작용효과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구성요소 2-3은 선행발명 2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사항에 해당한다.

###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선행발명 2의 배수밸브조작부가 ㄷ형상 안내부재의 출몰공에 개폐로드의 한 쪽 단부를 단순히 '¬'자 형상으로 절곡시킨 절곡부를 끼워 넣으면서 개폐로드가 ㄷ형상 안내부재와 수평을 이루도록 90도 회전함으로써 절곡부가 안내공에 삽입되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구성요소 2-1 내지 2-3과 선행발명 2의 배수밸브조작부는 ① 안내부재의 구조, ② 개폐로드 단부의 형상, ③ 개폐로드와 안내부재의 결합구조및 수단에 있어서 현격한 구성적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출몰안내부재와 선행발명 2의 다형상 안내부재가 구성상에 차이가 있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 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 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출몰안내부재(40)와 선행발명 2의 ㄷ형상 안내부재는 그 구조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양 발명의 안내부재는 개폐로드의 출몰이 가능하도록 하고, 개폐핸들의 회전 조작시 개폐밸브의 개폐를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요소라는 점에서 그 작용기능 및 작용효과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② 양 발명에서 개폐로드와 안내부재의 결합구조 및 수단의 차이는 개폐로드 단부의 형상과 안내공 개수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써, 이는 통상의 기술자의 창작범위 내의 단순한 구조 및 형상의 차이에 불과하고, 이러한 구조 및 형상의 차이가 양발명에서 안내부재가 갖는 작용기능 및 작용효과에 차이를 발생시킨다고 보기도 어렵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이탈방지핀(44)이 출몰안내부재(40) 양측면에 형성된 안내공(45)과 개폐로드(32)의 단부에 형성되어 있는 관통공(32a)을 통과하여 결합되도록 구성된다는 점이 선행발명 2의 배수밸브조작부와 가장 큰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개폐로드(32)의 하중을 출몰안내부재(40)가 자체적으로 지지하면서 개폐로드(32)가 출몰안내부재(40)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는데, 선행발명 2는 이러한 기능을 구비하지 못하며, 선행발명 2는 개폐로드를 개폐핸들 측에서 지지해줄 수단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지지판재를 구비하고 있고 이러한 구조는 생산단가 상승 및 제품 수리의 용이성을 현저히 낮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출몰안내부재와 선행발명 2의 다형상 안내부재가 그 기능상에 차이가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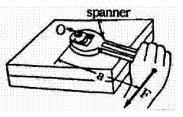
- ① 개폐로드(32)의 단부에 형성되어 있는 '관통공(32a)'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한정된 구성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이탈방지핀이 "개폐로드(32)의 하중을 출몰안내부재(40)가 자체적으로 지지"한다는 취지의 기능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문단번호 [18] 등)에서 찾아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이탈방지핀이 "개폐로드(32)의 하중을 출몰안내부재(40)가 자체적으로 지지"하는 기능을 내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행발명 2의 ㄷ형상 안내부재도 출몰공과 안내공에서 개폐로드를 자체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능상의 차이는 선행발명 2에도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또한 선행발명 2 중 갑 제3호증의 5의 도면에 의하면, 개폐로드의 이탈방지돌기(절곡부)와 안내공이 접하는 제1점, 개폐로드와 출몰공이 접하는 제2점, 개폐로드가하우징에 형성된 구멍에 접하는 제3점에서 개폐로드가 각각 지지되므로, 개폐로드가 다형상 안내부재로부터 이탈되는 것이 방지된다는 점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다고할 것이다.
- ③ 선행발명 2 중 갑 제3호증의 4의 도면에 의하면, 도시된 지지판재에 라면 솥 내부의 다른 구성들이 결합되어 있고, 하우징 하단을 견고하게 지지하는 용도로도 사용되므로, 위 지지판재가 단지 개폐로드를 지지하기 위한 역할만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선행발명 2에 도시된 지지판재의 기능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개폐로드만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다) 원고는, "선행발명 2의 경우 개폐로드를 회전시킬 때 그 토크가 ㄷ형상 안내부재의 한 쪽 면에만 작용하는 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경우 토크가 이탈방지 핀(44)에 의하여 출몰안내부재(40) 양측면의 안내공(45)에 분산되어 작용하므로, 이 사

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2에 비하여 안정적으로 개폐밸브를 조작할 수 있으며, 이사건 제1항 발명의 출몰안내부재(40)는 위의 사유로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아 내구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출몰안내부재와 선행발명 2의 다형상 안내부재가 그 효과상에 차이가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 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토크가 이탈방지핀(44)에 의하여 출몰안내부재(40) 양측면의 안내공(45)에 분산되어 작용하므로 안정적으로 개폐밸브를 조작할 수 있고, 출몰안내부재(40)는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아 내구성이 향상된다는 효과는 이 사건 특허발명으로부터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 ②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2 모두 안내공에 가해지는 모멘트는 개페로드를 누르는 힘(F)과 개폐핸들(34)의 길이(L)의 곱이며(M=F×L), 양 발명에서 F와 L이 동일하다면 개폐밸브(12)를 여는 조작력인 모멘트(M)도 서로 동일하므로,6)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 2에 비해 안정적으로 밸브를 조작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③ 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출몰안내부재가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아 내구성이좋다는 점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선행발명 2의 ㄷ형상 안내부재도 그 두께를 적절히 조절하면 변형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

<sup>6)</sup> 모멘트(moment)는 힘의 작용(作用)선에 내린 수직선의 길이와 그 힘을 곱한 것을 말한다. 너트를 스패너를 사용해 체결할 때 스패너의 말단을 잡는 힘을 작용시킬때와 스패너의 근본을 잡고 너트를 체결할 때에 말단을 잡고 작용하는 편이 회전시키기 쉽다. 물체를 회전시키려고 하는 힘의 작용을 모멘트(moment of force) 또는 줄여서 모멘트라고 한다. 모멘트 기호는 M로 표시한다. 모멘트(M)의 크기는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모멘트=힘×회전축에서 힘이 작용선에 긋는 수직선의 길이(M=F×a) (산업안전대사전, 2004. 5. 10., 도서출판골드).



건 제1항 발명의 출몰안내부재가 선행발명 2의 ㄷ형상 안내부재에 비해 변형이 적고 내구성이 향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출몰안내부재(40)의 출몰공(43)에 일직선 형상의 개폐로드(32)를 삽입한 후, 개폐로드(32)의 단부에 형성된 관통공(32a)에 이탈방 지핀(44)을 끼워 넣어 결합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어 생산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반면, 선행발명 2는 개폐로드를 결합하거나 탈거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그러나 ① 개폐로드(32)의 단부에 형성되어 있는 '관통공(32a)'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한정된 구성이 아니라는 점, ②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출몰안내부재의 결합 관 계만을 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 2에 비해 생산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다는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 ③ 선행발명 2도 ㄷ형 상 안내부재와 결합공을 분리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개폐로드의 결합 과 탈거가 용이하게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 (5) 검토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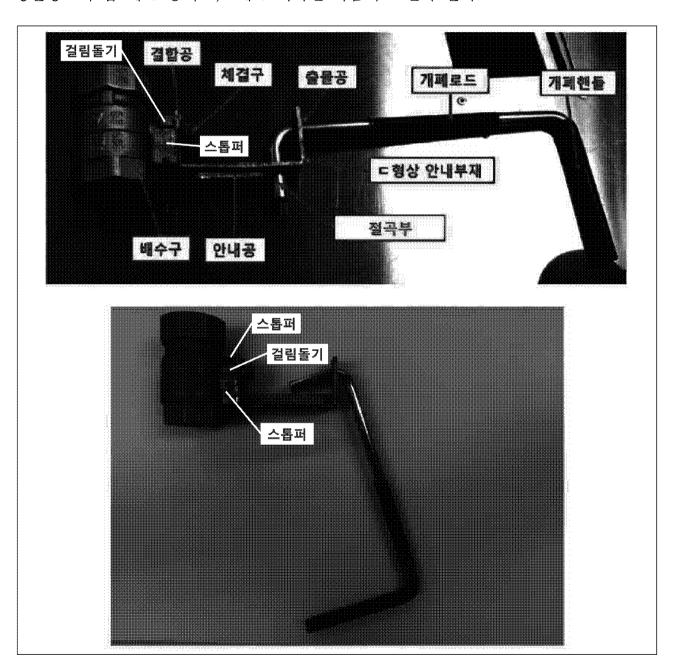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 나. 이 사건 제3, 4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에 더하여 밸브축(12a) 인접부에 걸림돌기(12b)가 형성되고, 출몰안내부재(40)의 결합공(42) 인접부에 이 출몰안내부 재(40)의 일정각도 회전 후 상기 걸림돌기(12b)에 걸리는 스톱퍼(46)를 형성한 특징을

한정한 것이고,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에 더하여 스톱퍼가 한 쌍으로 이루어지고, 서로 직각으로 형성된 특징을 한정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제3, 4항 발명에 한정된 걸림돌기 및 스톱퍼에 대응되는 구성을 선행발명 2의 갑 제3호증의 2, 3에 표시하면 다음의 도면과 같다.



살피건대, ① 선행발명 2 중 갑 제3호증의 2의 도면에 의하면, 밸브축 인접부에

걸림돌기가 형성되고, 걸림돌기에 걸리는 스톱퍼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② 또한 갑 제 3호증의 3의 도면에 의하면 스톱퍼는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③ 위 걸림돌기와 스톱퍼들은 개폐밸브를 개방 또는 폐쇄하는 상태에서 개폐핸들의 회전조작이 정지될 수 있도록 하는 작용효과를 갖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3, 4항 발명은 선행발명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다.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결국 이 사건 제1, 3, 4항 발명은 선행발명 2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우수

판사 나상훈

판사 이호산